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에 관한 연구

이 방 식*
박 석 재**

-
- I. 서 론
 - II. 신용장 취소의 의의, 성립시기 및 실무상의 유의점
 - III. 신용장 조건변경의 의의, 성립요건 및 실무상의 유의점
 - IV. 결 론
-

주제어 :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 취소, 조건변경

I. 서 론

무역거래에서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대금결제의 불안을 제거하여 무역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개설¹⁾하는 신용장은 2007년 7월 1일 전에는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두 가지 형태로 개설되어 왔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교신저자)

1)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방식·박석재, “신용장의 개설 관련 제 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pp.159~177을 참고하기 바람.

다. 그렇지만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이하 UCP 600이라 함))²⁾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고 취소불능 신용장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매 당사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부득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장의 취소는 수출상의 대금회수를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신용장금액의 감액, 유효기한의 단축 등의 조건변경은 수출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은 특히 수출상 입장에서는 중대한 문제이며, 개설은행과 수입상, 통지은행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신용장 취소의 의의, 성립시기 및 실무상의 유의점과 신용장 조건변경의 의의, 성립요건 및 실무상의 유의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는 연구방법으로서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과 관련한 제 문제들에 관하여 국내외 학자들 및 실무자들의 최신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과 관련된 제 문제의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업계 및 은행업계의 관계자들이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신용장 취소의 의의, 성립시기 및 실무상의 유의점

1. 신용장 취소의 의의

UCP 600은 신용장의 취소³⁾ 문제에 관하여 취소불능성을 강조하고 있

2) 이전의 신용장통일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UCP 600의 신 규정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반응과 함께 호평을 받고 있다(박석재, “UCP 600 운송서류 규정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8, pp.101~102).

다.⁴⁾ 그 이유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인 UCP 500에서 취소불능 신용장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즉, 오늘날 취소가능 신용장의 제한된 사용 때문에 취소가능 신용장이 UCP 600에서 제외된 것이다.⁵⁾ 따라서 신용장의 취소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무상 전혀 의의가 없기 때문에 UCP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것이다.⁶⁾

UCP 600 제2조는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UCP 600 제3조에서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UCP 600에 기초하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 신용장이 되었다.⁷⁾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UCP 500에 규정되었던 취소가능 신용장에 관한 조문들(제6조, 제8조)은 삭제되고, UCP 600은 취소불능 신용장만을 커버하는 것으로 되었다.⁸⁾ 바레인의 은행 전문가인 George씨는 UCP 600에서 취소가능 신용장의 삭제는 오래 전에 발생했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무척 반기고

3) 여기에서 신용장의 취소는 법률적으로 소급효과를 가지는 취소가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엄밀한 의미의 철회에 해당한다.

4)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약정서도 UCP 600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표준)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7조 제1항은 “은행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의 당사자(발행은행, 수익자, 확인신용장의 경우는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A.T.M.N. Hoque, “The irrevocable credit and the presenter's rights”, *DClInsight*, Vol.15, No.1, ICC, 2009. 1/3, p.14.

6)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p.69.

7) 다만 러시아, 오만, 볼리비아의 경우 국내법으로 신용장의 취소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신용장의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신용장통일규칙보다 현지법률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신용장을 러시아, 오만, 볼리비아 소재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받았을 때에는 실무상 주의하여야 한다(R.A. Schutze & G. Fontane, *Documentary Credit Law throughout the world*, ICC, 2001, p.18.).

8) 後藤守孝·吉野弘人, 『信用狀統一規則の實務Q&A』, 中央經濟社, 2008, p.25.

있다.⁹⁾

UCP 600에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용장이 수출상에 대한 수출대금의 지급보증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의 사정으로 신용장 자체가 취소되어 버린다면 지급보증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사실 취소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 신용장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신용장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¹¹⁾ 즉, 취소가능 신용장은 언제나 불충분한 지급 보장을 부여하여 왔다.¹²⁾ 반면 취소불능 신용장은 수출상에게 보다 높은 정도의 지급보장을 제공하여 준다.¹³⁾

또한 UCP 600에서 신용장이란 취소불능이며,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 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의 의무를 부담하며”(UCP 600 제7조 b항)¹⁴⁾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은 결제의 의무를 부담한다.”(UCP 600 제7조 a항)¹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9) N.D. George, “The irrevocable credit and UCP 600 article 32”, *DCINSIGHT*, Vol.13, No.1, ICC, 2007. 1/3, p.7.

10) 井上洋, 『The L/C 信用狀の實務手續き』, 同文館出版, 2007, p.60.

11) 유중원,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특징과 그 문제점”, 『금융법학』, 창간호,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07, p.23.

12) P. Ellinger & D.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p.7.

13) R. Bergami, “Will the UCP 600 Provide Solutions to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Vol.3, No.2, 2007. 7, p.42.

14) 이 점에 관하여 UCP 600 기초그룹의 위원장이었던 Gary Collyer씨는 “UCP 500 제9조 (d)항 (ii)호는 개설은행은 조건변경을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취소불능으로 구속된다고 규정하였다. 동 입장은 신용장의 개설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의 통지가 수익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취소를 요구한다면, 수익자는 여전히 그 취소 요청에 승낙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또한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시점에서 구속된다. 신용장의 SWIFT 또는 텔렉스에 의한 메시지가 문자 훼손되거나 또는 우송 중인 신용장이 분실하였다는 사실은 그 신용장이 개설되었고, 개설은행이 그 날로부터 구속된다는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G. Colly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under UCP 600*, Vol. I, II, III & IV, Collyer Consulting LLP, 2009, p.42.).

15) 동 조항은 신용장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더 이상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개설은행의 확약이 취소불능하게 되는 정확한 순간에 관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UCP 600이 개설은행이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의 발생시기가 신용장의 개설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다면 결제한다는 개설은행의 정지 조건부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신용장의 개설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의사표시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용장의 취소가 성립한다면 그 때까지 유효하였던 신용장은 장래에 있어서 효력을 상실하고,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즉, 신용장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며, 취소가 성립하기 전에는 유효하며 개설은행은 취소 성립 전까지 행해진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는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신용장의 취소는 신용장이 유효하게 성립한 때, 즉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은 없으며, 장래에 있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킴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용장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그 취소가 성립할 때까지의 사이에 그 신용장의 유효성을 신뢰하여 행동한 수익자 등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⁶⁾

2. 신용장 취소의 성립시기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장은 관계당사자 전원¹⁷⁾이 동의한다면 취소 및 조건변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 모두가 그 취소와 조건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감수한다면, 이것은 私人是 자기의 권리·의무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으로부터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취소와 조건변경에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여진다(P. Ellinger & D. Neo, *op. cit.*, p.9.).

16) 平野英則, “信用狀の取消し, 條件變更および事前償還請求の可否”, 『銀行法務21』, No.684, 2008. 2, p.46.

17) 여기에서 관계당사자는 개설은행, 확인은행(만일 있는 경우) 및 수익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개설의뢰인은 결코 신용장의 관계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G. Colly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under UCP 600*, Vol.V, Collyer Consulting LLP, 2009. 9, p.13(10.23)).

가지는 일부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까지 취소와 조건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어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멋대로 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UCP 600은 “제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만일 있다면),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UCP 600 제10조 a항).

동 조항에 따르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취소를 위하여 수익자,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은행의 동의를 얻는다면 그 취소가 성립하고, 신용장채무¹⁹⁾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수출지에서는 ① 수출상이 화물의 집하·가공에 착수하기 전의 단계, ② 수출상이 화물의 집하·가공을 완료한 단계, ③ 선박회사가 화물의 선적을 완료한 단계, ④ 매입은행이 수출환의 매입을 완료한 단계라는 무역거래의 통상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상이 신용장을 입수하고 ①의 단계이라면 취소에 합의하여 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②의 수출화물의 집하·가공에 착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해 화물을 남에게 전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취소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⁰⁾

3. 신용장의 취소 관련 실무상의 유의점

우리나라에서 개설하는 신용장에 취소가능 신용장은 없을 것이므로 수입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수출 측면에서도 현재로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을 접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UCP 600이 취소가능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취소가능 신용장이 UCP 600에 준거하여 개설될 수도 있다. 만일 개설의뢰인이 UCP 600 하에서 취소가능 신용장의 개설을 희망한다면, 개설은행은 그 신용장 속에 취소가능성의 모든 조건들을

18) 平野英則, “信用狀の條件變更の通知”, 『銀行法務21』, No.709, 2009. 11, p.64.

19)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20) 平野英則, 전계 주 16, p.47.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²¹⁾ 또한 신용장이 취소가능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 신용장은 취소불능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²²⁾

마지막으로 신용장의 취소가능에 대한 취급 및 해석은 UCP 500 제8조에 따른다는 특약을 함으로써 취소가능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²³⁾ 주의할 필요가 있다.²⁴⁾ 왜냐하면 신용장통일규칙은 강행적인 효력을 갖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가능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을 명백히 배제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⁵⁾ 또한 UCP 600 제1조의 수정규정에 의하여 취소가능 신용장이 개설되는 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위하여 취소가능의 표시가 없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⁶⁾

만일 당사자간 합의로 취소가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라도 UCP 600에서 고려하지 않는 취소가능 신용장을 통지받은 수익자나 지정은행은 동 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취소가능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내리고 있거나, 신용장의 취소가능에 대해서는 UCP 500 제8조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인 분쟁원인을 예방해야 한다.²⁷⁾ 또한 만일 취소가능 신용장이 UCP 600에 준거하여 개설된다면, UCP 600 제10조는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 조항은 누군가의 허락도 없이 언제라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취소가능 신용장의 성질과 모순을 야기하기 때문이다.²⁸⁾

21) ICC,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3rd ed., ICC Publication No.685, 2008, p.169.

22) J.E. Byrn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p.48.

23) 그러나 현실적으로 굳이 취소가능 신용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최석범·나정호·홍재성·동혜·유수철, “UCP 600의 새로운 개념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 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2, p.302.

24) 강진욱, “UCP 600의 개정에 따른 취소가능신용장의 실무적용 가능성”,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8. 12, p.245.

25)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최종본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 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 p.6.

26) 後藤守孝·吉野弘人, 전제서, p.26.

27)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p.29.

마지막으로 신용장의 취소가 성립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에게로의 신용장의 취소를 통지하는 전문 속에 수익자의 동의²⁹⁾가 있는 즉시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뢰문언을 기재하고 그 성공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³⁰⁾

Ⅲ. 신용장 조건변경의 의의, 성립요건 및 실무상의 유의점

1. 신용장 조건변경의 의의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개설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당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조건이란 수익자가 신용장에 기초하여 결제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신용장에서 규정된 조건을 말한다.³¹⁾ 만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조건변경을 위한 신속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조건변경의 요청은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³²⁾

그런데 원래 신용장은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 하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수출상의 사정으로 납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화물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수출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승낙한다면,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 신용장의 출하기한의 연장과 그에 수반하는 신용장

28) J.E. Byrne, *op. cit.*, p.109.

29) 이것을 'beneficiary's consent'라고 한다.

30) 平野英則, 전계 주 16, p.47.

31) 平野英則, 전계 주 18, p.63.

32) W. Baker & J.F. Dolan,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694, 2008, p.46.

의 유효기한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³³⁾ 또한 통상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사정에 의해 거래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입승인서의 변경, 개설은행의 추가지급보증, 보험의 가입 등이 필요한 때에도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³⁴⁾

상술하면 신용장 조건변경의 법률적 성질은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이며, 개설은행에 의한 조건변경의 발행은 수익자의 승낙이 있다면 변경 후의 조건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수익자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승낙이 있기까지는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그 승낙을 얻은 후에는 변경후의 조건에 따라 각각 결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진다. 게다가 조건변경의 성립 후 일치하는 제시 전에 개설은행이 결제하여야 하는 채무는 수익자의 제시가 변경후의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것³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³⁶⁾

요컨대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개설은행이 원래의 신용장에서 규정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 조건변경의 종류에는 신용장의 유효기한 및/또는 선적기한의 연장 또는 단축, 신용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등이 있다.³⁷⁾

2. 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요건 및 거절

(1) 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요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개설과 달리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³⁸⁾ 즉, 신용장조건의 변경도 취소의 경

33) 井上洋, 전제서, p.60.

34) 한상현, “자동성립조건부 조건변경에 관한 UCP 600 제10조 f항의 해석과 은행실무상의 대응책”, 『무역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09. 4, p.19.

35) UCP 600 제15조 a항 참조.

36) 平野英則, 전제 주 18, p.64.

37) 平野英則, 전제 주 18, p.63.

38) 전순환, “UCP 600 최종초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2권 제2호, 한국

우와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성립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개설은행, 확인은행(만일 있다면) 및 수익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게 수익자가 그 조건변경의 승낙을 전달하기까지는 원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에게 계속 유효하다. 이와 같이 신용장의 조건변경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장래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시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수익자는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보를 통지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수익자가 이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고 있지 않는 조건변경을 충족한 제시는 수익자에 의한 그 조건변경의 승낙의 통보로 간주되며, 그 시점에서 신용장은 조건변경되는 것으로 된다.³⁹⁾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규정된 기간 이내에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을 요청하는 조건변경을 발송한 경우, 만일 수익자가 전혀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무 회신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관하여 Gary Collyer씨는 “UCP 600 제10조 (b)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조건변경의 발행일로부터 그 조건변경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수익자가 규정된 기간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변경은 서류의 제시기간까지 수익자의 승낙 또는 거절을 위하여 여전히 유효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⁴⁰⁾

(2) 신용장 조건변경의 거절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거절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하는 것은 UCP 600 제10조 c항의 후반부분이다. 동 조항은 “...수익자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익자가 위 승낙 또는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고 있는 조건변경 내용에 부합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 내용을 승낙한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이 변경된다.”라고 규정하

무역연구원, 2006. 8, p.32.

39) 平野英則, 전계 주 16, p.48.

40) G. Colly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under UCP 600*, Vol.VI, Collyer Consulting LLP, 2010. 3, p.12(10.24).

고 있다. 단순한 조건변경의 거절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거절에 앞서서 서류의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조건이 조건변경 후의 신용장조건의 다른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¹⁾

예를 들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10만 달러의 원 신용장에 관하여 5만 달러 감액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 수출상이 조건변경의 승낙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10만 달러의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조건변경을 충족하는 제시는 아니므로 조건변경은 성립하지 않는다.⁴²⁾ 그런데 위의 경우에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5만 달러의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은행은 수익자의 침묵이 조건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제시는 수익자에 의한 조건변경의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⁴³⁾

또한 9월 30일까지의 선적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건변경과 금액을 감액한다는 조건변경이 된 경우에 감액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0월 3일을 선적일로 표시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는 것은 이 조건변경 모두를 승낙한 것으로 된다. 12월 31일까지의 조건변경은 받아들이지만, 금액 감액의 조건변경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는 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조건변경을 거절하고, 기한연장만의 조건변경을 재차 행할 필요가 있다. 거절 기한은 없지만, 거절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조건변경의 거절을 통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⁴⁴⁾

한편 UCP 600 제10조 e항에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승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용장 조건변경의 일부의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승낙을 유보하여 두고, 승낙 불가능한 조건을 재차 변경하여 받은 뒤 전체를 승낙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게다가 UCP 500

41)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게서, p.76.

42) G. Collyer, supra note 13, *op. cit.*, p.52(10.6).

43) ICC, “Two more recent Opinions on UCP 600”, *DCInsight*, Vol.14, No.2, ICC, 2008. 4/6, pp.10~11.

44)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게서, p.76.

에서는 “같은 하나의 조건변경의 통지에 포함되고 있는 ‘복수의’ 조건변경의 일부의 승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⁴⁵⁾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UCP 600에서는 일부의 승낙은 ‘거절’로 간주된다는 취지가 명기되었다. UCP 500과 UCP 600의 사이에서 그 주요한 의미에 변화는 없지만, 그 의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다.⁴⁶⁾

3. 신용장의 자동성립을 규정한 조건변경

UCP 600 제10조 f항은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는 무시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 조항은 조건변경서의 승낙 및 거절과 관련하여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은행들의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UCP 600에 추가된 것이다.⁴⁷⁾ 동 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개설은행들에 의한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시간제한을 두려는 아마추어인 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⁴⁸⁾

동 조항에 의하면 수익자가 조건변경 승낙 여부를 검토하는 중에 조건변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여 버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익자의 의사확인을 재촉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내에 수익자가 회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조건변경이 성립한다고 간주한다.”(이하 ‘자동적 조건변경 문언’이라 함)는 내용의 조건변경은 수익자의 권리를 손상하므로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의 거절이 없는 경우, 조건변경은 수익자에게 있어서 동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건부의 조건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동적 조건변경 문언을 금하고 있는 것은 본조 a항이 나타내는 취소불능 신용장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칙

45) UCP 500 제9조 d항 iv호.

46)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계서, p.77.

47)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계서, p.79.

48) D. Smith, “Lessons from UCP 600's first year”, *DCInsight*, Vol.14, No.4, ICC, 2008. 10/12, p.7.

에 반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⁴⁹⁾ 따라서 이와 같은 자동적 조건변경 문언은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것이며 허용되지 않는다.⁵⁰⁾ 본 조항에 관하여 ICC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이 규정은 UCP 600에 새로운 규정이며, UCP 500에 관하여 ICC에 의하여 발행된 Position Paper No.1에 포함된 문제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다. 이 관행은 화환신용장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익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신 규칙은 조건변경에서 그러한 조건들은 무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⁵¹⁾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UCP 600 제10조가 규정하는 조건변경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입각하는 수익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개설은행, 통지은행 및 매입은행이 실무상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이하와 같다. 우선 개설은행은 스스로 자동적 조건변경 문언을 기재한 신용장을 물론 개설하지 않아야 하지만, 개설의뢰인이 이러한 문언을 기재하여 조건변경을 의뢰한 경우에는 UCP 600 제10조 a항에 따라 조건변경에는 수익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동조 f항에 따라 이러한 문언은 무시되는 것을 설명하며 결코 이러한 종류의 의뢰에 응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조건변경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수익자의 승낙을 성립시키도록 통지은행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통지은행도 이러한 자동적 조건변경 문언을 추가하여 통지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의 승낙을 성립시키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그 취지를 전하고 승낙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개설은행에게 신속히 회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매입은행은 이러한 문언에 당혹해 하지 말고 조건변경 사실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뒤 제시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⁵²⁾

49)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계서, pp.79~p.80.

50) 平野英則, 전계 주 18, p.66.

51)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680, 2007, p.50.

52) 平野英則, “UCP600第10條項新設の背景および實務上の留意点”, 『金融法務事情』, No.1831, 2008. 4. 5, p.5.

4. 신용장의 조건변경 관련 실무상의 유의점

일반적으로 은행의 실무에서는 수익자가 불리하게 되는 조건변경에 대해서만 수익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급은 어디까지나 각 은행의 사무상의 편의적인 취급이며, UCP 600 제10조 a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상 모든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취득하는 일은 은행의 사무부담이 크게 된다. 은행으로서는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승낙하는 경우는, 동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은행은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변경⁵³⁾에 관해서는 수익자의 동의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것 이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만 개설은행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⁵⁴⁾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실무상은 수익자로서 불리한 조건변경⁵⁵⁾을 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승낙여부의 회답 존재 여부를 관리하고, 상당기간 회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은행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한편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 의뢰서를 접수할 때의 일반적인 유의점은 이하와 같다. 조건변경은 여신내용, 여신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의 신청이 여신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판단을 한다. 또한 신청을 받아서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 추가담보를 징구하는 등 채권의 보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⁵⁶⁾

또한 수익자가 통지은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성립한다. 그러나 조건변경의 통지실무에서는 통지은행은 모든

53) 즉,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을 말한다.

54)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거서, p.74.

55) 예를 들면 신용장 금액의 감액, 상품의 감량, 선적기한과 유효기한의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56) 經濟法令研究會 編, 『ゼミナル外爲實務Q&A』, 經濟法令研究會, 2006, pp.88~89.

조건변경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낙을 확인하고, 개설은행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설은행으로부터 조건변경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낙을 성립시키도록 의뢰가 있었던 경우 및 이 의뢰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금액의 감액과 유효기한의 단축 등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익자로부터 승낙여부의 회답을 입수한 뒤 개설은행에게 통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UCP 600 제10조는 조건변경에 필요한 당사자들로서 개설은행, 수익자 및 확인은행(만일 있다면)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조건변경이 기본 거래에서 그들의 기대 가치를 감소시킨다면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이 경우 수익자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조건변경할 수 있지만, 만일 동행이 개설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은행 자신의 위험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⁷⁾

IV. 결 론

본고는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과 관련한 제 문제로서 신용장 취소의 의의, 성립시기 및 실무상의 유의점과 신용장 조건변경의 의의, 성립요건 및 실무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본론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신용장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UCP 600은 취소불능 신용장만을 규정하고 취소가능 신용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UCP 600이 강행법규가 아닌 국제적인 상관습 규칙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가능 신용장이 개설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상이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장상에 취소가능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취소가능의 표시가 있다면 신용장이 취소 불능하도록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57) J.F. Dolan, "Identifying the applicant", *DCInsight*, Vol.14, No.2, ICC, 2008. 4/6, p.22.

또한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취소가 성립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지은행에게로의 신용장의 취소를 통지하는 전문 속에 수익자의 합의를 얻는 즉시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뢰문언을 기재하고 그 성공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관련해서는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을 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승낙 여부의 회답 존재 여부를 관리하고, 상당기간 회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은행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조건변경이 기본 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기대 가치를 감소시킨다면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상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수익자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조건 변경할 수 있지만, 만일 동행이 개설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은행 자신의 위험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여부에 대해 매입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진욱, “UCP 600의 개정에 따른 취소가능신용장의 실무적용 가능성”,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8. 12.
-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 박석재, “UCP 600 운송서류 규정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8.
- _____,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유중원,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특징과 그 문제점”, 『금융법학』, 창간호,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2007.
- 이방식·박석재, “신용장의 개설 관련 제 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 전순환, “UCP 600 최종초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2006. 8.
-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최종본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 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
- 최석범·나정호·홍재성·동혜·유수철, “UCP 600의 새로운 개념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2.
- 한상현, “자동성립조건부 조건변경에 관한 UCP 600 제10조 f항의 해석과 은행실무상의 대응책”, 『무역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09. 4.
- 經濟法令研究會 編, 『ゼミナル外爲實務Q&A』, 經濟法令研究會, 2006.
- 井上洋, 『The L/C 信用狀の實務手續き』, 同文館出版, 2007.
- 平野英則, “信用狀の條件變更の通知”, 『銀行法務21』, No.709, 2009. 11.
- _____, “UCP600第10條f項新設の背景および實務上の留意点”, 『金融法務事情』 No.1831, 2008. 4. 5.

- _____, “信用状の取消し, 条件変更および事前償還請求の可否”, 『銀行法務21』, No.684, 2008. 2.
- 後藤守孝・吉野弘人, 『信用状統一規則の實務Q&A』, 中央経済社, 2008.
- Baker, W. & Dolan, J. F.,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694, 2008.
- Bergami, R., “Will the UCP 600 Provide Solutions to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Vol.3, No.2, 2007. 7.
- Byrne, J.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 Collyer, G., *Frequently Asked Questions under UCP 600*, Vol.VI, Collyer Consulting LLP, 2010. 3.
- _____, *Frequently Asked Questions under UCP 600*, Vol.V, Collyer Consulting LLP, 2009. 9
- _____, *Frequently Asked Questions under UCP 600*, Vol. I, II, III & IV, Collyer Consulting LLP, 2009.
- Dolan, J.F., “Identifying the applicant”, *DCInsight*, Vol.14, No.2, ICC, 2008. 4/6.
- Ellinger, P., & Neo, D.,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 George, N.D., “The irrevocable credit and UCP 600 article 32”, *DCINSIGHT*, Vol.13, No.1, ICC, 2007. 1/3.
- ICC, “Two more recent Opinions on UCP 600”, *DCInsight*, Vol.14, No.2, ICC, 2008. 4/6.
- _____,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3rd ed., ICC Publication No.685, 2008.
- _____,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680, 2007.
- Hoque, A.T.M.N., “The irrevocable credit and the presenter's rights”, *DCInsight*, Vol.15, No.1, ICC, 2009. 1/3.
- Schutze, R.A., & Fontane, G., *Documentary Credit Law throughout the world*, ICC, 2001.

Smith, D., “Lessons from UCP 600's first year”, *DCInsight*, Vol.14, No.4, ICC, 2008. 10/12.

ABSTRACT

A Study on the Cancellation and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Lee, Bang Sik

Park, Suk Jae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issues in relation to the cancellation and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Those issues in relation to the cancellation are the significance and formation time of cancellation of letter of credit and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letter of credit.

Those issu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 are the significance and formation requirements of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and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the case of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If exporters receive letters of credit from foreign countries, they must confirm the indication of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When they find revocable letters of credit, they should amend the credits to be irrevocable credits.

If issuing banks amend letters of credit against beneficiaries, the banks should receive the beneficiaries' consent. If amendments devalue applicants' expectations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 the applicants for whom the credit issues are not liable to reimburse. Beneficiaries and issuing banks may amend a credit, but the issuing bank acts at its own peril if it does not obtain the applicant's consent.

Key Words : UCP 600, Letter of Credit, Cancellation, Amendment